

『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『국가보훈기본법』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-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구미시에 주소를 둔자로 함(안 제3조)
- 모든 시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토록 함(안 제4조)
- 각종 주요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과 의전상 예우, 보훈행사,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을 추진토록 함(안 제5조)
-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
-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7조)
-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시민의 책무와 민간부문의 참여분 위기를 조성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경북도 사회복지과 - 10490 (2007. 6. 28)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

-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는 총 10조로 규정하면서
- 조례의 제정목적, 용어의 정의,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, 보훈단체 및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음
- 안 제5조 각종 주요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 예우, 각종 보훈문화행사 및 현충시설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 예우와 공훈선양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음
- 안 제6조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,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에 필요한 예산지원, 전적지 등의 순례 및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- 안 제7조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운영,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며, 시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, 주차료 감면 등 복지지원의 범위를 7개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국가보훈기본법」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임
- 안 제7조 제1호의 복지지원 내용중
 - 「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,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,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한다」의 규정은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(생업지원) 및 「구미시공공시설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기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단체와의 경합이 예상됨
- 앞으로
 -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운영,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
 - 장애인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단체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